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3. 11. 25.

발의자 : 김 정순 의원외 2 인

1. 제안이유

- 계룡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계룡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등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2. 1. ~ 12. 20(20일간)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.
-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.